

직제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고객 점점 확대를 통한 원활한 보증서비스 공급과 본사 지원조직 효율화를 위해 직제를 조정함

2. 주요 개정 내용

- 가. 고객 점점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지사’를 신설하고, 기존 경기지사는 ‘경기남부지사’로 명칭 변경함
- 나. 서민 임차인 보호 보증업무 전문화를 위해 기존 금융기획실 내 관련 기능을 분화하여 ‘개인보증처’를 신설함
- 다. 리스크관리 일원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리스크관리실과 준법지원실을 통합하여 ‘리스크준법실’로 개편함
- 라. 도시재생 지원조직 효율화를 위해 도시재생운용처 및 도시재생 지원처를 통합하여 ‘도시재생심사처’로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획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8층 기획조정실
- 담당자(이메일) : manggong81@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313
- 팩스번호 : 051-955-5306

4. 예고기간 단축사유

조직 및 인력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조속한 규정 개정 필요

안전번호	제 호 (제 차 심사위원회)	협 의 사 항
협 의 년 월 일	2020. 12.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출 자	주 택 도 시 보 증 공 사 기획조정실장 김 기 태
제출년월일	2020. 12. .

1. 협의주문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협의한다.

2. 제안이유

고객접점 확대를 통한 원활한 보증서비스 공급과 본사 지원조직 효율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지사’를 신설하고, 기존 경기지사는 ‘경기남부지사’로 명칭 변경함 (안 제5조)

*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 :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등 관할

나. 서민 임차인 보호 보증업무 전문화를 위해 기존 금융기획실내 관련 기능을 분화하여 ‘개인보증처’를 신설함 (안 제5조)

* 금융기획실 : 보증공급 기획, 보증제도 일반(분양, PF 등)

개인보증처 : 임차인 보호 관련 보증제도(전세금반환, 임대보증금 등)

다. 리스크 관리 일원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리스크관리실과 준법지원실을 통합하여 ‘리스크준법실’로 개편함 (안 제5조)

라. 도시재생 지원조직 효율화를 위해 도시재생운용처 및 도시재생지원처를 통합하여 ‘도시재생심사처’로 개편함 (안 제5조)

마. 핵심직무 명확화를 위해 부서 명칭을 변경함 (안 제5조)

* 혁신성과처 → 성과재무처(성과 및 재무관리), 경영관리처 → 경영지원처(업무지원)

심사평가처 → 금융심사처(보증 심사, 사후관리, 고분양가·미분양관리 등)

바. 부서 신설·통합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조직도를 변경함 (안 제4조 별표1)

구분	현행 (4본부 50개 부서)	변경 (4본부 50개 부서)
본부	4본부	4본부
본사부서	9실 9처 1연구원	8실 9처 1연구원
영업부서	14지사 17센터	15지사 17센터

사. 공사의 직급별 정원을 규정에 반영함 (안 제7조)

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확정된 '21년 정기 증원 28명(3급 5명, 4급 8명, 5~6급 15명)을 반영하여 공사의 정원을 현행 838명에서 866명으로 조정함 (안 제7조)

*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별도정원('20.11월말 기준 14명) 제외

4. 참고사항

가. 증원협의 결과 요약 : 참고1

나. 관련 규정 : 참고2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2장 조직	제2장 조직	
제5조(본부의 편성) ① 각 본부는 다음 각목의 부서로 구성한다.	제5조(본부의 편성) ① 각 본부는 다음 각목의 부서로 구성한다.	
1. 경영전략본부 가.~나. (생략) 다. <u>혁신성과처</u> 라. <u>경영관리처</u> 마.~바. (생략) 사. <u>리스크관리실</u>	1. 경영전략본부 가.~나. (생략) 다. <u>성과재무처</u> 라. <u>경영지원처</u> 마.~바. (현행과 같음) 사. <u>리스크준법실</u>	명칭 변경 명칭 변경 리스크관리실 및 준법지원실 통합 "
아. <u>준법지원실</u> 자.~타. (생략)	<삭 제> 자.~타. (현행과 같음)	
2. 금융사업본부 가. (생략) <신 설> 나. <u>심사평가처</u> 다.~차. (생략)	2. 금융사업본부 가. (현행과 같음) <u>나. 개인보증처</u> <u>다. 금융심사처</u> <u>라.~카. (현행 다목 내지 차목과 같음)</u>	부서 신설 명칭 변경
<신 설> <신 설> <신 설>	<u>타. 인천지사</u> <u>파. 경기북부지사</u> <u>하. 경기남부지사</u>	직제 順 조정 부서 신설 경기지사 명칭 변경 및 직제 順 조정
카.~하. (생략)	<u>거.~러. (현행 카목 내지 하목과 같음)</u>	
거. <u>경기지사</u> 너. <u>인천지사</u> 더.~서. (생략)	<삭 제> <삭 제> <u>머.~저. (현행 더목 내지 서목과 같음)</u>	하목으로 이기 타목으로 이기
3. 자산관리본부 가.~사. (생략)	3. 자산관리본부 가.~사.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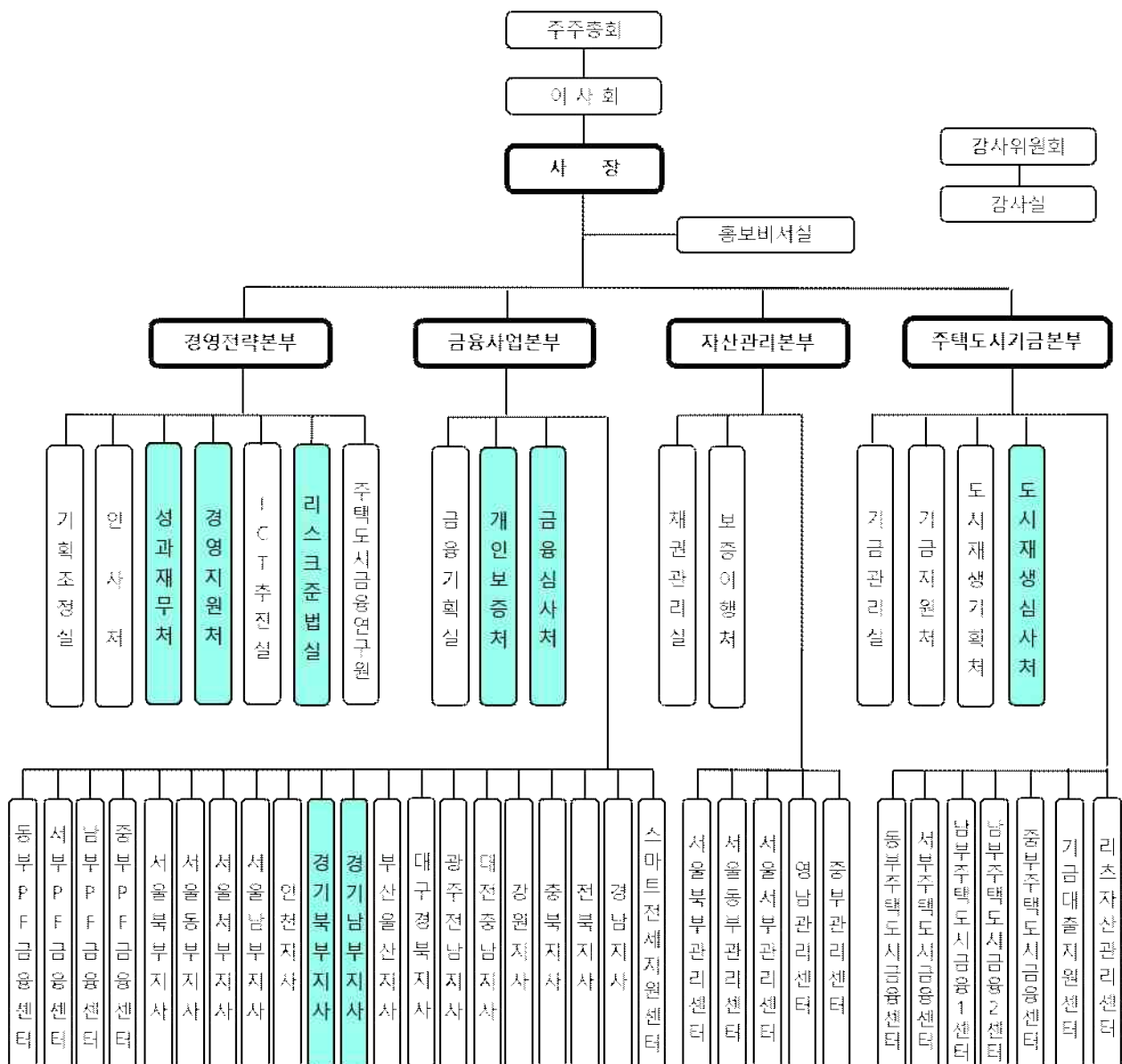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4. 주택도시기금본부 가.~나. (생략) 다. 도시재생기획처 라. <u>도시재생운용처</u> <u>마. 도시재생지원처</u> 바.~하. (생략) ②~⑦ (생략) 제3장 직원 및 직무 제7조(직원의 구분 및 정원) ① (생략) <신 설> ② <u>직원의 직급 및 직책별 정원과 부서별 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u> [별표1](제4조 관련) <u>조 직 도</u> <<u>신 설</u>>	4. 주택도시기금본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u>도시재생심사처</u> <<u>삭 제</u>> 바.~하.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제3장 직원 및 직무 제7조(직원의 구분 및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u> ③ <u>조직단위별 정원의 배정 및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별표1](제4조 관련) <u>조 직 도</u> * 상세내용 불임1 참조 [별표2](제7조 관련) <u>정 원 표</u> * 상세내용 불임2 참조	도시재생운용처 및 도시재생지원처 통합 " 직급별 정원 규정 문구 조정 직제조정에 따른 조직도 변경 [별표2]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북부지사는 업무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사규에서 조직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정에 의한 해당 조직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사규의 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시행세칙 제12조 및 [별표8]을 삭제한다.	

[붙임1] (제4조제7항 별표1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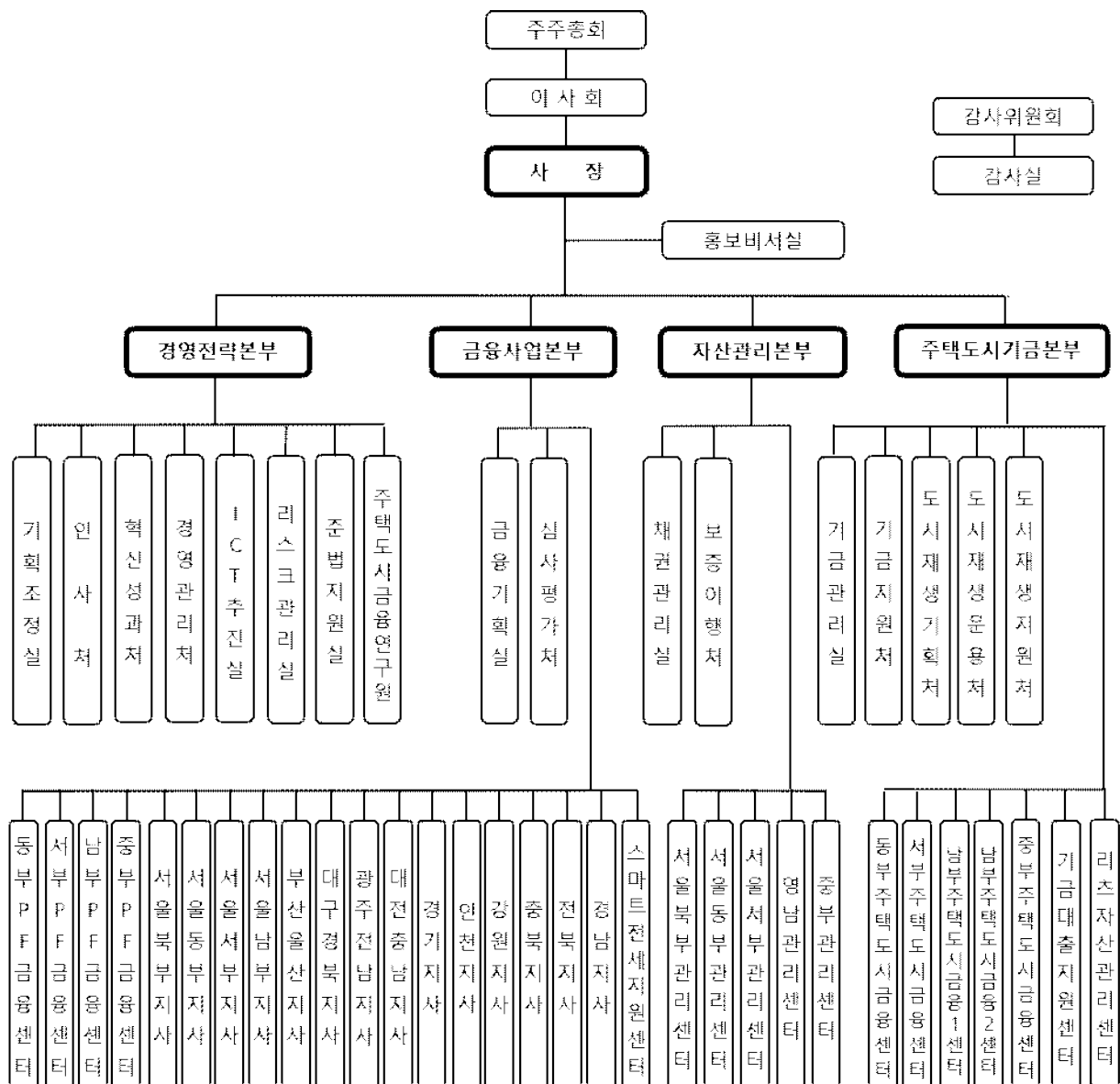
개 편 조 직 도

■ 4본부 8실 9처 1연구원 15지사 17센터



현 재 조 직 도

■ 4본부 9실 9처 1연구원 14지사 17센터



[붙임2] (제7조제2항 별표2 신설)

정 원 표

(단위 : 명)

임원	1급	2급	3급	4급	5-6급	7급	업무 지원직	경영 지원직	계
5	22	29	109	254	381	23	2	41	866

*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별도정원 제외

규제신설 체크리스트

1. 규제 개요

규제명	직제 규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대상	해당없음		
신설사유			
기대효과			

2. 체크리스트

① 규제 해당 여부	해당 여부 (○, X 표기)	
- 고객 등 특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X
- 고객 등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가?		X
- 불특정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가?		X
- 불특정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가?		X

⇒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규제로 판단(아래 항목 체크)

② 규제개혁 추진전략의 3대 중점방향에 부합하는가?	해당 여부 (○, X 표기)	
- 고객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인가?		
- 회사의 손실 방지,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인가?		
- 비정상적인 업무관행을 폐지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규제인가?		

③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해당 여부 (○, X 표기)	
- 규제 신설의 목적이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가?		
- 고객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제 방법이 적정한가?		
- 규제 신설로 인한 고객 등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 규제 신설로 인한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등 사익 침해보다 회사의 손실 방지 등 공익이 더 큰가?		

⇒ ②~③의 7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모두 충족할 경우 규제 신설을 인정

※ 체크리스트 세부항목에 대한 추가적 자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 첨부